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5. 1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5건 및 규칙안 1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9일(일)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아·미용권 지원 조례안
-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박덕수·이일규·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김연우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의회교실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의회교실”등에 대하여 정의함.
-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의회교실의 운영계획 및 운영방식을 정함.
- 제6조 의회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의회교실”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 ①의장은 제2조제1호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및 「광명시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홍보) ①의장은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조)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연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이주희 (2680-2509)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3일

발 의 자 : 김윤호·박덕수의원

찬 성 자 : 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단체 기능을 활성화하자 함

2. 주요내용

-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사전의견수렴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신설(안 제2조의2)
-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조의3)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의3(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2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25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u> <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u> <u>정책의 추진</u> <u>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u> <u>렴 및 조정</u> <u>3.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u> <u>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u> <u>사항 등</u>
<u><신 설></u>	<u>제2조의3(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u> <u>은 제2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u> <u>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u> <u>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u> <u>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u> <u>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u> <u>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u> <u>에 공개하여야 한다.</u>
<u>제2조의2 (생 략)</u>	<u>제2조의4 (현행 제2조의2와 같음)</u>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박성민·박덕수·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투명한 의정을 구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여부 및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사후 관리 강화 권고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겸직신고 및 이를 확인하는 부분을 구체화(안 제4조) : 겸직사항(겸직 여부 상관없음) 신고 의무화, 겸직에 대한 사임 권고 명문화, 겸직사항 공개 및 정기적으로 겸직신고 의무화를 통한 현행화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화(안 제6조)
- 관리인 등 겸직금지 구체화(안 제7조)
- 겸직신고 등과 관련한 징계기준 구체화(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련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및 경제제도개선과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 요청 - 기획예산과-2694(2019.2.14.)
 - 내용 :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여부 및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 관리 강화 실적 제출 요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를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이 준수하여야”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로, “별지와”를 “별지 제1호서식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를 “제2조에 따른”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징계등”을 “징계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검직”으로,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직신고”를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거짓·부정확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제출”을 “자료 제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임기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중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같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검직신고 위반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검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검직에 따른 사임권고 거부(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 , 상공업 ☐ , 건설업 ☐ , 서비스업 ☐ , 교육 ☐ , 전문직 ☐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한 글

비례대표

성명

한 자

생년월일

일 월 년

광명시의회 의원

(인)

광명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17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김연우 (2680-2507)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김윤희·박덕수·이일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

2. 주요내용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항 및 서식 삭제(제1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항 및 서식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
-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련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및 경제제도개선과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 요청 - 기획예산과-2694(2019.2.14.)
 - 내용 :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여부 및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 관리 강화 실적 제출 요청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입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이하 “강령”이라 한다)”를 “조례”로, “광명시의회의원”을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강령”을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의장”을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타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중 “사유없이”을 “사유 없이”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별지 제6호의3 서식”을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상호간”을 각각 “상호 간”으로, 같은 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광명시의회”를 “소속”으로, “소속 직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광명시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받은”을 “신고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 된”을 “신고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을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소속의원”을 “소속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의원”을 “소속 의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중”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광명시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향”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향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1미만”을 “1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

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개최일로부터”를 “개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이일규 (2680-2539)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 <u>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u> 」(이하 " <u>강령</u> "이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 <u>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u> 」에 따라 <u>광명시의회의원</u> 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u> ----- ----- ----- ----- ----- <u>광명시의회 의원</u> ----- ----- -----.
제2조(정의) 이 <u>강령</u>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제2조(정의) -- <u>조례</u> -----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 <u>안건심의 등</u> "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의장</u> 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疏明)하고 스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 ----- ----- ----- ----- ----- ----- ----- -- <u>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
피할 수 있다.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
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
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
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
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
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
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
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
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

-----.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

----- 다른 사람-----
-----.

② -----

다른 사람-----
-.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다른 사람----

-----.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의 금지 등) -----

----- 사유 없이----

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

-----.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호의2서식-----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6호서식-----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6호

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
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의2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초과사
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
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
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
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광명시장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

서식-----.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별지 제6호의
2서식-----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
별지 제6호의3서식-----

-----.

② -----
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7
호의2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
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
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
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하
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
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상호 간----- 상
호 간 -----

-----.

② -----

----- 상호 간-----

----- 별지 제8호서식-----
-----.

야 한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생략)

2. 광명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4. (생략)

제19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광명시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소속 ----- 직원-----

3. 4. (현행과 같음)

제19조(성희롱 금지) -----

----- 상호 간 -----

-----.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 의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신고 받은 -----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

-----.

④ (현행과 같음)

⑤ -----
신고된 -----

-----.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별지 제11호서식-----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6호의2서식-----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12호서식-----

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생략)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

-----.

1. -----
----- 경우: -----

2. -----

----- 경우: -----

3. -----

-----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4.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14호서식-----

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3. (생략)
4. 소속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4의2.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

-----.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

1. ~ 3. (현행과 같음)
4. 소속 의원-----

- 4의2. 소속 의원-----

5.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에서 -----

-----.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생략)

2. 광명시의회 의원

3.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총 수(數)는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

⑥ · ⑦ (생략)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의원

3. (현행과 같음)

④ -----

---- 제3항 -----
-----.

-- 제3항 각 호-----

--- 1 미만-----.

1. 2. (현행과 같음)

⑤ -----
한 차례만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 ① -----

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의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개최 -----

-----.

- 긴급한 -----
-----.

② -----

-----.
----- 1 이상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견청취 등) -----

----- 공무원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별지 제7호의2 서식] 광명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성명</td> <td style="width: 40%;"></td> <td style="width: 10%;">생년월일</td> <td colspan="7"></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명</td> <td colspan="7"></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본인 관련자명</td>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본인, 직계존·비속명</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 관련자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무</td>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번</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명 (상호, 법인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 등록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장 소재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7</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8</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9</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0</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 광명시의회의원 광명시의회의장 귀하	성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삭 제)
성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박덕수·김연우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제창록·이주희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90일 이내의 연간회의 일수를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100일 이내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간회의 일수 조정 : 90일 이내 → 100일 이내(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90일”을 “10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김연우 (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의일수)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u>90일</u>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의일수) ----- ----- --- <u>100일</u> -----. ----- ----- ----- -----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제창록·박덕수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김윤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 신뢰 제고

2. 주요내용

-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 범위는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 및 자매결연행사 참여 등”이며, 허가권자는 의장임(안 제2조 및 제3조)
- 심사위원회는 교육인, 법조인 등의 7인으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조)
- 의회 개회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명 및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출장을 제한 함(안 제 8조제1항)
- 국외 출장을 하여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 국외 출장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행정안전부 선거관리과-456)호
- 비용추계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

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해당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 등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의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공무국외출장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2532)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9조 관련)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예정인물 (직책 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제10조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광명시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그 밖에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u>각호</u>와 같다. 1. (생 략) 2. 3개 <u>국가이상</u>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4. (생 략)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u>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u> 6. <u>기타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u> 제3조(허가권자) 제2조 <u>각호의 1의 규정</u>에 의한 <u>의원의 공무국외출장</u>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u> 제1조(목적) ----- <u>광명시의회 의원</u>----- ----- -----. 제2조(적용범위) ----- ----- <u>각호</u>-----. 1. (현행과 같음) 2. -- <u>국가 이상</u>----- ----- 3. 4. (현행과 같음) 5. ----- <u>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u> ----- ----- 6. <u>그 밖에 광명시의회 의장</u>----- ----- <u>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u> ----- 제3조(허가권자) --- <u>각 호에 따른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
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
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
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광명시
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
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
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
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
여할 수 없다.

② (생략)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
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
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3. (생략)

<신설>

⑥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 의장
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에 따른 ---
-----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
-----.

-- 관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을 포함하여 7명 -----
----- 중에서
-----.

④ ----- 민간위원의 비율은 3
분의 2 -----.

⑤ ----- 공무국외출
장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장
이 인정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제5항-----
-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신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광명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

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

⑦ ----- 기능 -----

--- 의장이 -----.

제5조(심사기준) ----- 심사기준 -----
-.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명 -----
-----.

③ 간사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해당 -- 의회 -----
-----.

제7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 ---
----- 민간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
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
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신 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
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
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
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
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
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
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
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
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
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 다르게 -----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 사유 없이-----

3. -----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
른 지방의회의원 선거-----

4. ----- 품위유지 의무 -

②----- 경우 외-

----- 다르게 -----
경비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환수
금액 등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
--- 하려는 ----- 30
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광명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신 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

② -----
----- 의회 -----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도 -----

-----.
----- 경우에 -----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
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
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
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
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야 한다.

-----.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의장은 공
무수행----- 기간을 공무국외
출장 기간으로 -----

-----.

----- 추가로 -----

--.

② -----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

---- 최소한-----

---.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운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4일

발 의 자 : 김운호·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현충열·한주원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
(안 제2조 외)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조(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의 개정)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를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건설 근로자”를 “지역건설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건설 근로자”를 각각 “건설 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5조 제목외 제1호 및 제3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6조 제목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9조 중 “지역건설 근로자”를 “지역건설 노동자”로 한다.

제4조(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상시 근로자”를 “상시 노동자”로 한다.

제5조(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유사근로자”를 “유사노동자”로 한다.

제7조(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약근로자”를 “취약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취약근로자”를 “취약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취약근로자”를 “취약노동자”로 한다.

제8조(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가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11조(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조(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한다.

제13조(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한다.

제14조(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근로작업시설”을 “노동작업시설”로 하고, “근로의 기회”를 “노동의 기회”로 한다.

제15조(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한다.

제16조(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7조(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18조(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이형덕 (2680-6582)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4일

발 의 자 : 한주원·박덕수·현충열·
조미수·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헌법 및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안 제5조)
- 청소년의 보호(안 제6조)
- 청소년 노동권익 사업(안 제7조)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8조)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안 제9조)
-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안 제10조)
- 센터 운영의 지원(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근로기준법
- 참고자료 : 불임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한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성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① 청소년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

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5. 청소년 안전 일자리 육성 및 창출
6. 청소년 안전 노동권익 지킴이 운영
7. 청소년 경제활동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수탁자 선정, 취소 및 정지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휘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의원 한주원(2680-2542)
	의원 박덕수(2680-2532)
	의원 현충열(2680-2537)
	의원 조미수(2680-6580)
	의원 이형덕(2680-6582)

□ 근로기준법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 타 지자체 조례 현황

(2019. 5. 2. 현재)

자치단체	계	조 례 명	비 고
계	37		
경기도	9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5)	경기도,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서울특별시	4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성북구
부산광역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광주광역시	5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29)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강원도	1		원주시
충청남도	4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조례(3)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라북도	1		전주시
전라남도	7		전라남도,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해남군
경상북도	1		구미시
경상남도	1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3일

발 의 자 : 현충열·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김윤희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정하는 자활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 설></u> <u>라.</u> (생략) 2. 3.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정하는 자활기업</u> <u>마.</u> (현행 라목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4일

발 의 자 : 김윤호·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현충열·한주원·
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안 제5조)
-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제8조)
-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안 제9조)
- 1인 가구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택법」, 「임대주택법」, 「여성발전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 가정”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광명시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2. 소셜 다이닝을 위한 식생활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4.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5.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이주희 (2680-2509)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박덕수·이형덕·박성민·
제창록·현충열 의원

1.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광명시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실직, 폐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간병보호가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했을 경우
- 제7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 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사유와 조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만 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간병보호가 필요하거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
9.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가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 1가구 포함)
15.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7.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을 했을 경우
18.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 내용 및 방법)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5. 7. 24.>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이주희·이형덕·박덕수·
박성민·제창록·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항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현행조례안 : 불임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현충열 (2680-2537)

참 고 자 료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7. 31>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31>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4일

발 의 자 : 박성민·김연우·안성환·
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공하여 위생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이용권의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이용권 정산 및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록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연간 1인 6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시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연2회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3조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결정)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6조(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광명시 소재 업소 중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④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금액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목욕, 이용, 미용서비스 각 대표협회장(이하“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요금 및 후불제 정산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정산) ① 각 대표협회장 또는 협회에 속한 업소장은 이용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청구가 발생하면 협약체결된 금액 기준으로 신청한 계좌에 이용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이용권 별지 제2호 서식과 자체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 안 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김연우 (2680-2507)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한주원 (2680-2542)

【별지 제1호 서식】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			처 리 기 한 즉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지원 신청 자격	광명시 거주 70세 이상 중 아래 해당자 (해당항목 표기) ☐ 국민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 행복e음에 보장가구원으로 책정된 자에 한함(단순 동거가구원 제외).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정부나 자체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록·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자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지원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목록·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광명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 신청자격관련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복e음 확인 사전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대리인 가족여부 확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애 동의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담당 공무원 확인</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직 급</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성 명</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서명)</td> </tr> </table>		담당 공무원 확인		직 급		성 명	(서명)
담당 공무원 확인									
직 급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지급 관리대장

연 번	신청 일	지원대상자			분기별 지원내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자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이용대금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업 소 명				대표자	
사 업 명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광명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수한 경로 목록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3일

발 의 자 : 김윤호·현충열의원

찬 성 자 : 한주원·조미수·박성민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관내 일정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계획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 음식문화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15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광명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명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광명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①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대표
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외식업 지부장
5. 소비자 관련 시민사회 단체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5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위생과
입 안 자	의원 김윤희 (2680-2538) 의원 현충열 (2680-2537)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0일

발 의 자 : 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박덕수·이형덕·박성민·
제창록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를 정함(안 제4조)
- 주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과 광명시의”를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유지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따르며,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책을 수립·실시할 때”를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요청하여야 하고”를 “요청하고”로, “있으면”을 “있는 경우”로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제

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와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1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1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삽입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삽입한다.

제29조 앞에 “제2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2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삽입한다.

제33조 앞에 “제3절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등”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3절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등”을 삽입한다.

제44조 앞에 “제5장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삭제한다.

제46조 앞에 “제5장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삽입한다.

제54조 앞에 “제6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삭제한다.

제56조 앞에 “제6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u>사항과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 규정함-----.</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u>따르며, 미세먼지를 포함한다.</u>	제2조(정의) ----- ----- ----- <u>따른다.</u>
제3조(시의 책무) ① <u>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실시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u>	제3조(시의 책무) ① <u>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② <u>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u>
② <u>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u>	③ ----- <u>시책의</u>

수립·실시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4조 ~ 제12조 (생 략)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
----- 필요한
경우에는 -----
- 요청하고-----
----- 있는 경우 ---
-----.

제4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 ~ 제14조 (현행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3조 ~ 제19조 (생 략)

<신 설>

제4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절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0조 ~ 제28조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제29조 ~ 제32조 (생 략)

<신 설>

제3절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등

제33조 ~ 제43조 (생 략)

<신 설>

제5장 안전관리자문단 등

제44조 ~ 제53조 (생 략)

<신 설>

제6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제54조 ~ 제63조 (생 략)

<신 설>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삭 제>

제15조 ~ 제21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3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삭 제>

<삭 제>

제22조 ~ 제30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1절 재난안전대책본부

제4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삭 제>

제31조 ~ 제34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

제2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삭 제>

제35조 ~ 제45조 (현행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와 같음)

제3절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등

<삭 제>

제46조 ~ 제55조 (현행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같음)

제5장 안전관리자문단 등

<삭 제>

제56조 ~ 제65조 (현행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와 같음)

제6장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13일

발 의 자 : 현충열·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박성민·김윤희 의원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의 정의(안 제2조)
- 재정 지원(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5.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광명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족이 아닌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한주원 (2680-2542)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운전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운전면허 자진반납일		년 월 일		
「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빙하는 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가족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5.8.11,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7] [[시행일 2018.9.28]]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별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별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타 지자체 조례 및 고령운전자 규정 현황**

(2019. 5. 2. 현재)

지자체	조례명	고령운전자	제·개정	비고
경기도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65세	2019. 3.13.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65세	2019. 4.15.	
서울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70세	2018.12.14.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70세	2019. 2.14.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65세	2019. 3.28.	
충남 당진시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3.29.	
충남 아산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3.15.	
충남 천안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7. 5. 1.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4. 1.	
전북 정읍시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4. 2.	
전남 순천시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4.18.	
전남 여수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4.16.	
경남 진주시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4.12.	
경남 합천군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70세	2019. 4. 3.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

- 부산시(75세 이상) : 10만원상당 교통비(2018. 7월)
- 서울 양천구(65세 이상) : 10만원상당 선불교통카드(2019. 6월 예정)
- 전남 곡성군(65세 이상) : 10만원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2019. 5월)
- 경기도 : 10만원상당 지역화폐(하반기 예정)
- 전북 정읍시 : 1회 20만원 상당 교통카드(조례 명시)